



종묘 판매에 대한 도움말

- 주법에 따르면 식물성 소재를 판매하기 전에 종묘 판매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이는 캘리포니아 식품 농업법(FAC) 6721에 따라 개인, 회사 및 산림계에 적용됩니다.
- 면허를 소지해야 하나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면허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:
 - 회계연도에 식물 판매가 \$1,000 미만인 경우(보유 및 매매를 제외한 식물 포함)
 - 판매 의사를 **Agricultural Commissioner's Office**에 신고한 경우
 - 모든 식물이 식물이 재배된 카운티 내에서만 판매되는 경우 (FAC 6741(a), (b), (c))
- 면허 발급에 대한 예외에는 종자만 판매, 소매 플로리스트로만 판매 및 벌목된 크리스마스 나무 판매가 포함됩니다. (FAC 6742-6744)
- 최소 묘목장 면허 수수료는 \$150.00에 고객에게 직접 유통하기 위해 종묘가 판매, 재배 또는 조립되는 각 위치에 대한 면적 수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.
- 면허는 취소 및 정지될 수 있으며, 신청 도는 갱신은 조사 및 청문회 이후 **California Secretary of Agriculture**에 의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**County Agricultural Commissioner's Office**의 조사관은 **California Secretary of Agriculture**의 권한을 통해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귀하의 묘목장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. (FAC 섹션 5023)
- 귀하의 부지에 감염 또는 침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**County Agricultural Commissioner's Office**의 조사관은 해당 식물 또는 기타 매개체를 해당 건물에 보관하라는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 조사관은 또한 원래 해충이 발견된 곳에서 5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부지에 대해 동일한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 (FAC 섹션 5701 (a), (b))

묘목장 면허 또는 추가 정보를 얻으려는 경우 760-752-4700 또는 <http://www.sdcounty.ca.gov/awm/nursery.html>을 통해 샌디에고 카운티 농업 및 도량형부에 문의하면 됩니다.

식물성 소재 수입에 관한 도움말

California 및 **San Diego** 카운티는 모든 형태의 외래 해충으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. **San Diego** 카운티의 농업은 2021년 기준 \$17억 5천만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주 및 카운티 직원이 수행하는 규제 및 검사는 농업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.

다른 국가 및 다른 주에 존재하는 해충 및 캘리포니아 지역에 서식하는 해충으로부터 캘리포니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역소가 존재합니다. 다양한 검역소를 모두 알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식물성 소재를 수령할 때 도착 사실을 신고하고 **County Agricultural Commissioner's Office** 직원의 검사를 받도록 법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.

다음 사실은 귀하께서 **California Food and Agricultural Code (FAC)**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:

- 다른 카운티, 주 또는 국가에서 식물 제품을 운송해 오거나 수령하는 경우 **County Agricultural Commissioner's Office**에 연락하여 해당 제품을 검사받아야 합니다. (**FAC** 섹션 6401(a), (b))

San Diego 카운티의 경우 760-752-4713으로 전화하십시오.

-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는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(**FAC** 섹션 6401(a), (b)). 위반 시 식물 압류/말살 및/또는 금전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**FAC** 섹션 6301.1 (a))
-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물 또는 물건이 위치한 주 내의 모든 운송 수단 또는 장소에 언제든지 출입해 해충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**FAC** 섹션 6303)
- 트럭 운송 회사를 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주에서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검사를 위해 캘리포니아 국경 출입국에 들려야 합니다. **California Food and Agriculture** 검사관으로부터 검사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. 필요한 인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운전자는 금전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. (**FAC** 섹션 5341.5 (a), (b))
- 이 문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챕터 또는 확립된 검역을 위반하는 식물 또는 기타 물건의 운송이 이 주로 반입되어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, 해충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, 선적물은 검사관에 의해 또는 그의 감독 하에, 선적물의 소유자 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. (**FAC** 섹션 6461.5)

위에 나열된 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샌디에고 카운티 농업 및 도량형부(760-752-4700)에 문의하십시오.